

# 「창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검토 보고

이우완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 의견임

## I 의원발의 조례제정 개요

### 1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4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2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상정시기 : 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
- 발 의 자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
-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다. 위원위 위촉 및 해촉(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마. 경비 · 포상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II 담당부서 검토내용

### 1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위탁단체명	최초설치	위원수	비고
‘꽃비’	진해청소년전당	2019.3	14	
‘봉림’	봉림청소년문화의집	2005.3	16	
‘저요!’	마산YMCA	2005.2	11	

### 2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광역 4곳, 기초 33곳

구 분	자 치 단 체 명	
광역자치단체 (4/17)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자치단체 (33/227)	서울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부산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대구	북구, 수성구, 중구
	인천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강원	고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서산시
	전남	광양시,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경북	울릉군
	경남	사천시, 양산시

※ 훈령(규정) : 6개시군(김해시, 목포시, 무안군, 부안군, 의령군, 창원시)

### 3 상위법 저촉여부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제4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법령검토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은 없음

#### 4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 조례안 일부수정 및 추가사항

##### ○ 조례안 제3조(기능) (수정의견)

- 1호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제안 및 건의’ 에서 ‘**정책, ... 평가과정의 제안 및 건의**’ 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로 수정하고
- 2호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교류 및 업무 협조’ 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로 수정하고

##### ○ 조례안 제4조(구성) (수정의견)

-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에서 ‘위원회는 ...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수정하고

##### ○ 조례안 제5조(위촉) (수정의견)

- ②항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다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에서 ‘**1년으로 하며, 다만, 연임할 수 있다**’ 를 ‘**1년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 ③항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에서 ‘**사임 등으로**’ 를 ‘**사임 등으로 인하여**’ 로 수정하고

##### ○ 조례안 제6조(해촉) (수정의견)

- ②항의 2호 ‘**범죄등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입힐 경우**’ 에서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입힐 경우**’ 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수정하는 의견

##### ○ 조례안 제12조(위탁) (수정의견)

-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에서 ‘**시 관내**’ 를 ‘**관내**’ 로 수정하는 의견

## 5 소요예산 :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없음(기지급)

### III 종합의견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창원시 참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현재 3개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 수립 및 효율성 제고
- 「창원시 참여위원회 규정」은 조례 공포 이후 폐지 예정
-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

붙임 : 1.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1부.  
2. 조례 수정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